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5. 10 선고 2021가단12176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연, 김정원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4. 19.

판 결 선 고 2022. 5. 10.

주 문

1. 가. 소외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. 1. 31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76,666,66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원고에게 76,666,666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별지 목록 제2, 4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/3 지분 및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4626/85251 지분에 관하여,

가. 소외 C과 피고 사이에 2017. 1. 31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소외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자백간주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

판사 노진영

별지